

의안번호	2218499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6. 10. 1.
추 계 번호	26A230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제3항 (정기검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함	의무규정
	안 제20조제1호의2 (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1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3제3항(정기검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20조제1호의2(적합명령)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의3에 따른 적합성 심사 및 수리·개조·이전 등의 비용을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풍력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 수리·개조·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풍력발전설비의 관련 비용에 대해 국가 등의 재정지원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 중 공공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는 66개(실증 12개 포함)임

[표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 현황('26.8월)
(단위: 개)

전체 풍력발전 사업수	133
공공*	66(12**)
민간	67

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 사업자로 구분(단독 출자 34% 이상, 합동 출자 50% 초과)

**실증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산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운영 시 공공으로 구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